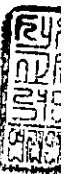


**성북구 어르신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운영을 위한  
전문교육 및 메뉴업 제작 위탁 협약서**

2018년 3월



보건소 : 성북구보건소

대학교 :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

# 성북구 어르신 건강주치의 전문교육 및 매뉴얼 제작 위탁 협약서

과 제 명 : 성북구 어르신 건강주치의 전문교육 및 매뉴얼 제작

협약 당사자

(보건소) 성북구 보건소장

(대학교)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

2018년도 성북구 어르신 건강주치의사업과 관련하여 (보건소)와 (대학교)는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.

## 제1조(목적)

본 협약은 “보건소”의 성북구 어르신 건강주치의사업 참여의료기관과 관련 직원에게 제공하는 전문교육 및 실무지침 매뉴얼 제작을 “대학교”에게 위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## 제2조(책임의 내용)

성북구가 주관하는 ‘2018년 성북구 어르신 건강주치의 시범사업’ 운영을 위한 전문교육 및 매뉴얼 제작을 “대학교”에 책임하고, “대학교”은 본 사업의 운영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며, “보건소”는 이에 적극 협조한다.

## 제3조(기간)

본 협약기간은 과정 시작일로부터 과정이 끝나고 결과 자료를 제공 받는 날까지로 한다.

## 제4조(신의성실 및 상호협조)

- ① “보건소”와 “대학교”는 본 협약의 각 조항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.
- ② “대학교”는 직원 및 어르신 건강주치의 참여의료기관 워크숍을 통한 전문교육과 실무지침 제작을 성실히 이행하고 이와 관련하여 “보건소”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### 제5조(사업비 지급)

본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금 800만원(금팔백만원)으로, “보건소”는 “대학교”가 사업을 이행한 후 지급한다.

### 제6조(사업비관리, 집행 및 집행점검의 의무, 부정수급에 대한 처리)

“대학교”는 “보건소”로부터 교부받은 위탁사업비를 <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사업수행 규정>에 근거하여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 그 보조금을 용도 내 관리 및 집행하여야 하며 “보건소”는 상기(上記) 규정 준수여부에 대해 관리·감독하고 “대학교”는 집행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. 또한 <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처벌 규정>에 의거,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, 보조금의 반환, 제재부가금 부과·징수, 다른 보조금 교부의 일시 정지, 강제 징수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.

### 제7조(사업비 운영 및 정산)

본 협약 체결에 따라 사업비 운영 및 정산은 기 제출하여 승인받은 첨부 계획서에 의거, “대학교”가 위탁받은 사업비를 운영하며 그 결과보고서와 함께 비용을 청구하고, “보건소”는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 대금을 “대학교”에 지급한다.

### 제8조(행위의 금지)

“대학교”는 “보건소”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.

- ① 사업을 타인에게 재 책임하는 행위
- ② 사업이행 중 또는 이행 후에 사업내용 및 결과를 외부로 유출하는 행위
- ③ 본 사업의 결과를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하는 행위

### 제9조(준수사항)

“대학교”는 사업수행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- ① 사업수행 중 타 기관과 협의사항 발생시 “보건소”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.

- ② 사업수행 중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한 사항은 서류를 작성하여 “보건소”와 “대학교”가 사전 협의하여 결정한다.

#### 제10조(비밀유지)

- ① “보건소”와 “대학교”가 본 협약의 이행 과정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취득한 일체의 정보가 본 협약의 목적 이외의 용도에 이용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.
- ② 상기 비밀유지의무는 그 정보가 공지의 사실이 되었을 때 소멸되며, 이외의 경우에는 협약 종료 또는 해지 이후에도 계속해서 존속한다.

#### 제11조(정보보호)

“대학교”는 협약기간은 물론 협약 종료 후에도 본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 및 교육자료를 제 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.

#### 제11조(보고)

“대학교”는 과업완료시 결과물을 과업종료 시 “보건소”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기간 완료 후 한달 이내 결과보고서 인쇄물(실무지침 매뉴얼)을 제출한다.

#### 제12조(협약의 해지)

- ① “보건소”는 “대학교”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.
  - 1.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을 때
  - 2. “대학교”가 협약 내용을 위반하거나 “보건소”의 요구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 한 때
- ② 협약 해지 시 “대학교”는 지급 받은 사업비 전액을 “보건소”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하며, “대학교”는 이와 관련한 일체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.
- ③ “보건소”와 “대학교”는 본 협약을 해지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해지에 따른 제반사항을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.

**제13조(해석)**

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본 조항의 해석에 관한 사항은 “보건소”와 “대학교”는 협의하여 시행하고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는 “보건소”의 해석이 우선한다.

**제14조(협약서 효력)**

본 협약의 효력은 협약일로부터 발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**제15조(협약서 작성)**

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 “보건소”와 “대학교”는 서명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

2018년 3월

**보건소**

서울특별시 성북구  
(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 63)  
성북구보건소장 황 원 숙 (인)

**대학교**

서울특별시 종로구  
(서울특별시 종로구 103)  
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김 성 철 (인)

